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가정폭력방지법)

[시행 2018.3.27.] [법률 제15543호, 2018.3.27., 일부개정]

여성가족부(복지지원과), 02-2100-6422

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17., 2013.7.30.>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0.5.17.. 2014.1.21.. 2014.5.28.>

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27.>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,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7.30.>

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.21.>

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.21.>

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4.1.21.>

1.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

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1.21.>

⑨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
신설 2013.7.30., 2014.1.21.>
[전문개정 2007.10.17.]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가정폭력방지법)

[시행 2018.3.27.] [법률 제15543호, 2018.3.27., 일부개정]

여성기족부(복지지원과), 02-2100-6422

제4조의6(긴급전화센터의 설치 · 운영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18., 2015.6.22., 2018.3.27.>

1.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
 2. 관련 기관 · 시설과의 연계
 3.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
 4.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(이하 "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임시 보호
-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·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18.>
-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·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8.>
-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1.18.>

[본조신설 2009.5.8.]

제4조의6(긴급전화센터의 설치 · 운영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18., 2015.6.22., 2018.3.13., 2018.3.27.>

1.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
 2. 관련 기관 · 시설과의 연계
 3.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
 4.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(이하 "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임시 보호
-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·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18.>
-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·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8.>

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1.18.>
[본조신설 2009.5.8.]
[시행일 : 2018.9.14] 제4조의6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가정폭력방지법)

[시행 2018.3.27.] [법률 제15543호, 2018.3.27., 일부개정]

여성가족부(복지지원과), 02-2100-6422

제7조의2(보호시설의 종류)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단기보호시설 :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
2. 장기보호시설 :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(住居便宜) 등을 제공하는 시설
3. 외국인보호시설 :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
4. 장애인보호시설 :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

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.

2010.1.18., 2018.3.27.>

[전문개정 2007.10.17.]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7.1.1.] [대통령령 제27751호, 2016.12.30., 타법개정] [전체조문보기](#) 

제1조의2(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) ①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
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4.11.19.>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
2.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
고시한 기관·단체(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·단체
는 제외한다)
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
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(이하 "국가기관 등의 장"이라 한다)은 해당 기관·단체에 소속된 사
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,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
다. 이 경우 기관·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
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7.16.>

③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, 시청각교육, 인터넷 홈페이지를
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고, 대면(對面)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
어야 한다.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
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7.16.>

1.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
2. 성인지(性認知)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
3.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

④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
일까지 전년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를 말한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
2.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자원을 갖
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 -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- 나. 정관이나 규약 등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
나 단체

- ⑥ 별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,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,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7.16.>
- ⑦ 별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7.16.>
-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별 제4조의3제8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,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7.16.>
- ⑨ 국가기관 등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별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 전문기관·단체 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7.16.>
- ⑩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,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7.16.>

[전문개정 2014.1.28.]